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1390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유진

피 고 1. B

2. C

피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기복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의 서울 강남구 F 대 193.9㎡의 각 3/20 지분에 대한 ‘2016. 2. 20.자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제1항 기재 토지의 3/2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 접수 제42572호로 마친 소유권인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 등

1) 합병 전 주식회사 G은 2015. 8. 20.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2억 원, 대출만기일 은행승인일로부터 1년인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5. 8. 21.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E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을 2억 6,000만 원 한도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G을 합병한 후 2016. 8. 18. 소외 회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일을 2017. 8. 21.로 연장하는 취지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만기일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7.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외 회사와 E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11. ‘소외 회사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964,228원 및 그 중 199,999,933원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8. 3. 1.까지는 연 13.58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E은 2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소외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위 대출원리금은 2020. 5. 21. 기준 263,318,405원 상당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1) E은 1990. 5. 9. 서울 강남구 F 대 1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3/10 지분에 대해 ‘1988. 9. 2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의 각 3/20 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 접수 제42572호로 ‘2016. 2. 2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E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의 3/10 지분에 대해 피고들 앞으로 1/2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신분관계 등

1) 피고들은 E과 D의 아들들인데, 피고 B은 I생이고, 피고 C은 J생이다.

2) E과 D는 2018. 4.경 이혼하였으며 D가 피고인들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2, 갑 10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기하여 E에게 대출원리금 중 연대보증 한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

나) E은 이 이 사건 토지의 3/10 지분에 대해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 위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과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기하여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가) E이 이 사건 증여로 무자력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E은 향후의 증여세 등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한 점, 피고들이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로서 사해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이 사건 증여 후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연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이나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로써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채무자 또는 수익자이다.

다) 피고들은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부 등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E의 금전채권자로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중 2억 6,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5호증의 2, 갑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은행, L은행, M은행, N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 결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의 이 사건 증여 무렵 주요 재산관계는 아래 표와 같이 인정된다.

	구분	내역		가액(원)	순번
적극재산	예금	은행	계좌번호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66,822	①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47	②
			(계좌번호 3 생략)	1,138	③
			(계좌번호 4 생략)	1,597,952	④
		M은행	(계좌번호 5 생략)	214,897	⑤
		N은행	(계좌번호 6 생략)	4,074	⑥
	부동산	이 사건 토지		225,117,900	⑦
		용인시 기흥구 O아파트 P호		310,000,000	⑧
	합계			537,002,830	⑨
소극재산	보증채무금	원고		200,000,000	⑩
	전세보증금	위 P호		230,000,000	⑪
	합계			430,000,000	⑫

3) 위 2)항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무렵 E의 적극재산 가액은 537,002,830원 상당이고, 소극재산 가액은 4억 3,000만 원 상당이며, 이 사건 증여 직후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가액을 공제한 적극재산 가액은 311,884,930원(= 537,002,830원 - 225,117,900원)이어서, E은 이 사건 증여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 E이 이 사건 토지 지분 3/10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 여하 등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사해의사 존부의 판단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2) E이 이 사건 증여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에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E이 이 사건 증여 무렵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위 표 순번 ⑧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외 비교적 소액이 예금된 예금채권이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대한 상태여서, 위 아파트의 가액과 전세보증금의 차액 8,000만 원과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면 공동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를 위하여 위 8,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2억 원을 대출받고 자신이 연대보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어린 나이의 친아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 바 E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16. 9. 28. 이 사건 아파트 역시 매도하여 금전으로 환가한 직후 그 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증여로써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채무자이자 피고들의 친권자 중 한명이었던 E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당시의 또 다른 친권자였던 D 역시 이 사건 증여로써 E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마. 원상회복 의무 등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소병석